< 특허청 고시 제2020-20호 >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소관 : 산업재산활용과]
제정 2020. 1. 10. 고시 제2020-1호
개정 2020. 7. 1. 고시 제2020-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은 지식재산 경영활동 등이 우수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2. "기술이전수입"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말한다.

3. "PCT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은 특허청장이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말한다.

6. "특허수수료비용"이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특허청에 납입한 수수료 비용을 말한다.

7. "경상기술료"란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판매건수 등 경제적 실적에 기반하여 사전에 약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제3조(신청방법) 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면(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년도 해외출원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3. 측정대상 기간 중 심사청구건의 명세서 작성비용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4. 전년도 기술이전수입 실적 목록 [별지 제4호 서식]

5. 전년도 외국에 접수한 PCT출원 목록 [별지 제5호 서식]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면

② 공동출원의 경우 해당기관이 제3출원인 이내인 경우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이 선정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신청기관의 임직원과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② 신청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이 타당한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위원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에 맞추어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4개 기관을 선정한다.

제7조(증빙제출 및 검증)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원 및 PCT출원 증빙서류는 출원번호, 출원일 및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출원사실증명원뿐만 아니라 해당국 전자출원 화면을 캡처한 그림파일도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③ 명세서 작성비용의 증빙서류는 제3조제1항3호에 따라 제출한 목록별 금액 및 이 금액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아직 명세서 작성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금액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수입 실적의 증빙서류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목록별 수입액 및 이 금액을 징수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과 대조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선정결과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우수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이 취소된 기관을 제외한 종합점수 상위기관을 재선정해야 한다.

제8조(우수기관 선정) ① 특허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증된 4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관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이며,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제9조(선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선정된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우수기관 선정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특허품질경영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우수기관 선정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최종 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기관 관리) 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의 장은 선정 이후 3년간 매년 정량 평가항목의 종합점수를 산출(전년도 기준)하여 선정당시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총 100점)
   가. 해외출원율(25점)
   나. 명세서 작성비용(25점)
   다. 기술이전 성과(25점)
   라. 발표평가(25점)

2.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해외출원율	• (해외정규출원+PCT출원) / 신규 국내출원	• 해외정규출원(가출원 제외) : 1개국당 1건만 인정 • 신규 국내출원 : 분할·변경출원 및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외
명세서 작성비용	• 심사청구건(분할출원 제외)의 평균 명세서 작성비용	• 측정대상 : 전년도 심사청구건 • 심사청구 전까지 명세서 작성에 투입된 비용을 합산
기술이전 성과	• 기술이전수입/특허수수료비용 • 경상기술료 수입/기술이전수입	• 전년도 수입으로 인정되는 실적 • 각 항목별 점수 비중(0.5) 부여
발표평가	• 국내출원 선별 과정의 효율성·적절성(15점) • 특허비용 확보 노력(10점)	
- 공동출원의 경우, 해당기관이 제3출원인 이내인 경우만 인정		

3.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산출기준(정량평가)

○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점수 산출

평가항목	최고점(25점)	최저점(0점)
해외출원율	50%	0%
명세서 작성비용	20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기술이전 성과	상대평가	

※ 각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 상위기관(4개 기관)을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법인등록번호	
			개인	생년월일	
	업 종	(산업분류코드:□□□□□)			
	기관 대표번호			기관 팩스번호	
	주 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부서명		직위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공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외 출원 목록[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심사청구건의 명세서 작성비용 목록[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기술이전 수입 실적 목록[별제 제4호 서식] 1부 5. 외국에 접수한 PCT출원 목록[별지 제5호 서식] 1부 6. 발표자료(PPT) 1부 7. 공문(제출 서류 사실 확인)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해외 출원 목록

연 번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국내 선출원 출원번호	비 고
1						
2						
3						
합계						건

※ 추후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제출 필수

※ 추후 해외출원 증빙서류는 출원번호, 출원일 및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출원사실 증명원뿐만 아니라 해당국 전자출원 화면을 캡처한 그림파일도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출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청구건의 명세서 작성비용 목록

연 번	출원번호	명세서 작성비용	비 고
1			
2			
3			
합계	건	원	

※ 추후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제출 필수

※ 추후 명세서 작성비용의 증빙서류는 금액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아직 명세서 작성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기 금액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이전 수입 실적 목록

연 번	계약 기술명	특허 정보	기술료 형태	계약 형태	실제입금액	비 고
1						
2						
3						

※ 추후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제출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에 접수한 PCT출원 목록

연 번	PCT출원 번호	비 고
1		
2		
3		

※ 추후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증빙서류제출 필수

※ 추후 해외출원 증빙서류는 출원번호, 출원일 및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출원사실 증명원뿐만 아니라 해당국 전자출원 화면을 캡처한 그림파일도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출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서약자 (심사위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	
			팩스	
			e-mail	

본인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 심사위원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 심사위원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신청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겠습니다.
4.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위반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모든 행정상 제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심사위원): (서명)

특허청장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평가표

접수번호		신청기관	
심사위원	(서명)	평가일자	20 . . .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점수	비 고
해외출원율 (25점)	(해외 정규출원+PCT출원) / 신규 국내출원			
명세서 작성비용 (25점)	심사청구건(분할출원 제외)의 평균 명세서 작성비용			
기술이전 성과 (25점)	기술이전수입 / 특허수수료 비용(12.5점) 경상기술료 수입 / 기술이전수입(12.5점)			
발표평가 (25점)	국내출원 선별 과정의 효율성·적절성(15점)			
	특허비용 확보 노력(10점)			
종합점수				

※ 공동출원의 경우, 해당기관이 제3출원인 이내인 경우만 인정

※ 각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 상위기관(4개 기관)을 선정

*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비율로 점수 산출

[별지 제8호 서식]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결과서

연번	접수번호	신청기관	종합점수	결 과
				선정
				선정
				선정
				선정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위와 같이 선정합니다.

20 . .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